



출연자원

관련부처
환경부

지원대상
중소·대기업

4-3.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(환경부)

환경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

✓ 지원대상
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
 -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은 실증사업화 과제외의 경우 기업 또는 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

✓ 주요사업

구분	사업내용
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	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환경기술·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, 환경질 개선 및 녹색성장 주도
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	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·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토양·지하수 환경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%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
환경융합신기술 개발사업	미래 환경시장 선점과 신산업창출 등 환경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을 위해 기술융합을 통한 고효율 환경기술 개발
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	기술개발 및 현장적용이 시급한 분야에 녹색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을 위한 집중지원을 통해 환경현안 해결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

✓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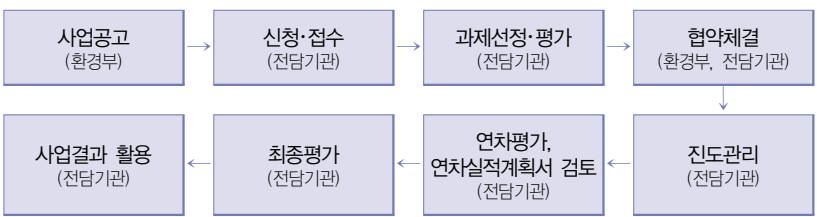
- 지원방식 :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
-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

구분	지원조건	지원금액
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유형에 따라 총 연구비의 50~75% 이내 지원 • 기술료 납부 (정부출연금의 10~40%, 기술개발 후 5년 이내) -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수대상 기술료의 50% 감면 	과제당 5억원 이내
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사업		과제당 3억원 이내
환경융합신기술사업		과제당 5억원 이내
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		과제당 7억원 이내

✓ 지원규모

-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: 99억원(신규)
-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: 215억원 이내(신규)
-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: 52억원 내외(신규)
-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: 19억원(신규)

✓ 추진절차



* (전담기관)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✓ 신청방법

- 신청시기
 -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: 2013년 3월
 -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: 2013년 3월
 -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
 - 1차 : 2013년 4월 / 2차 8월
 -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: 2012년 5~6월
 - 1차 : 2013년 4월 / 2차 8월
- 접수방법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(<http://ecoplus.keiti.re.kr>)에서 신청

↳ 문의처

www.keiti.re.kr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
- (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) 티사업실 (02)380-0351, 0352, 0337
 - (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) 토양환경기술센터 (02)380-0383, 0385
 - (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) 미래환경사업실 (02)380-0369, 0368
 - (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) 미래환경사업실 (02)380-0374, 0362
-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(044)201-6665